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5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55541 판결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소2336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변론 종결2020. 6. 5.

판결 선고2020. 8. 14.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소2336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C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5. 9.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별지1 해임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합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현재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19. 5. 9. 정기총회에서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제12조(조합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벌칙)

⑤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자금관리대리계약서약정을 위반하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벌칙금(50만 원~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기 전 소명기회 1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중 1개 방법 선택)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라. 피고는 2019. 5. 16. 이사회에서 '원고가 조합의 공동이익을 저해하고 손해를 주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벌칙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벌칙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벌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조합규약 개정 당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내용상 처분사유도 없으며, 이 사건 벌칙규정을 개정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내지 강요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주택법 및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위로 조합에 끼친 영향을 시인하면서 300만 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인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약속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벌칙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벌칙규정(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의 무효 여부 가) 살피건대, 별지2 관련규정 기재와 같이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관련규정의 취지는 조합규약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지, 조합원의 지위보장 및 조합규약 변경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지2 관련규정 기재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1호는 조합규약(영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정된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2019. 5. 9.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규약에 이 사건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 조합원 422명 중 찬성 375명, 반대 27명, 기권 20명(총 조합원 473명 중 출석 조합원 142명, 서면결의 포함 422명 참석)의 결의로 통과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하여 행정청의 변경인가가 없어 무효라거나 달리 조합규약 변경 결의과정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벌칙규정은 범칙금 부과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2, 14, 15, 18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방어권 행사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2019. 6. 26. 오후 6시 조합사무실에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참석해달라는 취지의 2019. 6. 24.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임원인 D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은 소명절차를 안내하면서 소명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는 취지로 알렸다.

②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서 범칙금부과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여 소명절차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인정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인정서'라 한다(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원고는 위 서류가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후 원고는 2019. 6. 26.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출석하여 별지1 해임사유와 같은 내용에 대한 소명을 하고, 위 인정서 작성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2019. 10. 12. 정기총회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추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⑤ 이 사건 벌칙규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제재를 받는 조합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

소명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소명절차 완료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2019. 10. 12. 피고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도 있었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위배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가) 어떤 비위사실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 자료들을 통하여 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피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5. 9.자 피고 정기총회에서 별지1 해임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던 점,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점, 2019. 10. 12. 피고 정기총회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는 별지1 해임사유 기재 각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로 확정할 수 있다.

[표2]

- ① 조합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외면하고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조합을 혼란에 빠트림.
- ② 원고는 이사회 회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의혹을 유발하는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들간 갈등을 유발시켜 집행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③ 결국 원고는 소신이라는 미명하에 정보에 어두운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조합의 공동의 이익(조합가입계약서 10조 1항 7호)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
- ④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5월 9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한바, 원고는 범칙금 300만 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벌칙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인 조합의 공동이익 침해, 조합규약, 가입계약서 규약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합규약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원고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실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소명절차에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첫 번째[별지1 해임사유 1)항]는 원고가 일부 조합원들(일명 협의체)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고 원고의 안건이 조합의 이익이 되는 양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조합규약 제30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과정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점, 조합원들은 이사회 위 회의록을 언제든지 열람하여 의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밝혔던 자신의 반대의견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결내용 등에 대한 공개 및 검증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선동하여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두 번째[별지1 해임사유 2), 3)항]는 시공사 E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에 관하여, 원고가 대안도 없이 E에게 원상복구만 주장하면 설계변경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공동이익(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E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입게 될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한 사유(가압류, 연체금)는 가정적 상황이며, 피고가 사전에 원고나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E이 피고와의 사전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여러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반대의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공사의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내용은 조합총회 내지 이사회 의결사항(조합규약 제23조, 제26조)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결과정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세 번째[별지1 해임사유 4)항]는 중도금이자 선납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조합의 집행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였고, 네 번째[별지1 해임사유 5)항]는 업무대행사 위임계약 해지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합의해지'하자고 의결되었음에도 원고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말했으며, 공청회로 합의해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공청회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이자 선납,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내지 조합 사업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조합구성원들의 단합이나 조합의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사회(집행부) 결정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공론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구성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인정서로 법률상 원인이 성립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26.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여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입주지원센터에 원고에게 부과한 범칙금 300만 원이 입금되어야 당시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열쇠를 인도[키 불출(拂出)]할 수 있다고 통지한 점, ② 원고는 2016. 6. 25.

입주지원센터로부터 입주자 명단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점, ③ 원고는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의 입주가 예정된 상황으로 아파트 열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었으며, 이후 같은 날 개최된 소명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인정서 작성의 철회 및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명의견을 밝혔던 점, ⑤ 피고도 원고에게 소명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던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정서로 범칙금 납부 약정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의 범칙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범칙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9.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희찬

판사김선숙

판사서동민

별지